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전매체> 12. 27(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260)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044-204-7261)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 제조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❶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 추진체계, ❷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등 세부 지원정책, ❸정책 이행 관리 사항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자료(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 (스마트공장 도입성과) 생산성 29.4% 향상, 품질 42.8% 개선, 원가 16.8% 절감, 고용률 2.4% 향상, 매출액 6.4% 증가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료(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❷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스마트제조혁신법」 주요 내용 >

① **(기본적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을 규정

② **(세부 지원정책)**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인력,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표준 등의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③ **(정책 이행관리)** 추진·전문기관 관리·감시, 부정행위 기관 제재 (참여 제한, 환수),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사항 규정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자료(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❶ 정책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
❷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인력 등 스마트제조혁신 전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료(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 취지

○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 추진 경과

○ 송갑석의원 대표발의('20.11.26), 노용호의원 대표발의('22.9.1) → 법안소위 대안 의결('22.11.23) → 산중위 수정의결('22.11.24) → 법사위 수정의결('22.12.7) → 본회의 통과(정기회 제400회, '22.12.8)

□ 제정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제1~4조)** : 목적, 용어 정의, 정부 책무, 타법과의 관계 규정

○ **제2장 추진체계 (제5~7조)** :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기본적 정책 추진체계** 규정

○ **제3장 지원 및 기반 조성 (제8~26조)** :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인력, 국제협력 등 **세부 지원정책을 규정**

○ **제4장 보칙 (제27~33조)** : 추진·전문기관 관리·감시, 부정행위 기관 제재, 권한 위임·위탁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주로 규정

□ 향후 계획

○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하위법령 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22.6월)

참고2 제정법률안 구성 [총 4장 33조]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추진기관 지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 조성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제10조(산·학·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제14조(전문기관 지정),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16조(공급기업 육성), 제17조(표준 보급·확산), 제18조(보안 강화),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제20조(교육 및 홍보), 제21조(근로환경 개선), 제22조(우수기업 선정·지원), 제23조(국제협력), 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제25조(금융지원 등),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4장 보칙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28조(보고와 검사), 제29조(청문), 제30조(자료요청),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32조(사업비 환수),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